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  
운 영 위 원 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9. 18. 김인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. 9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【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인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,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

을 제한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(안 제6조 신설).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## 1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- 조례안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(이하 '의정활동비 등')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,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.

#### 2 의원 의정활동비 법적 근거

- 지방의회의원에게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·여비·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

#### ※ 의정활동비 등 개념(지방자치법 제33조)

의정활동비	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원
여비	본회의 의결·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금원
월정수당	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- 이 중 월정수당은 급여의 개념이고, 의정활동비 등은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,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지방자치법 제33조).

※ 서울시의원은 매월 월정수당(약371만원)과 의정활동비(자료수집비 및 연구비: 120만원, 보조활동비: 30만원)를 지급받고 있음.

-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급여성 경비로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는 ‘월정수당’을 제외한 수당성 경비인 ‘의정활동비·여비’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### 3 입법고문 검토 의견

- 의회 입법고문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적극적 입장(상위 법령과 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)이 1명, 소극적 입장이 2명으로 나타났음(첨부자료 참조).
- 적극적 입장의 의견을 보면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구금상태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적법하다고 함.
- 소극적 입장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, 무죄추정의 원칙·과잉금지의 원칙·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음.
- 참고로 제7대 의회 이후 ‘의원 구속 현황 및 판결결과(참고자료 참조)’를 보면 9명의 의원이 형사기소되었으나,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, 1명은 공판 진행 중에 있음.

### 4 결 론

-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이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에 대한 여론의 지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(TV조선,

2014.11.23. ‘이00, 구속 수감 후 세비 7억 이상 꿀꺽’ ; 시사포커서, 2014.10.31. “살인교사’ 김00 의원에 구속 중 1500만원 지급’).

- 그러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‘유죄판결’을 예상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반론(무죄추정의 원칙) 등이 있다는 점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치적 명예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.
- 또한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직에 종사하는 의원에게 있어서 단순한 비용보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수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임.
-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 자율권의 범위에서 의회위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무죄추정의 원칙·과잉금지의 원칙·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#### 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#### 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 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<p>제6조 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</p> <p><u>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u></p>